

부산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5812 판결 [건물명도등]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2024. 9. 11.

판결 선고2024. 10. 16.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5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3일 선불), 임대차기간 2021. 5. 20.부터 2022.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다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야반도주하였고, 첫 달 차임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차임, 관리비, 청소비를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1개월의 연체 차임 55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주은영

별지